

**민간재해예방기관 간담회  
(안전관리전문기관)**

2021. 4. 27.

##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

❖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위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예방대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 성과 거양

□ 일시 및 장소: '21.4.27. (화) 15:00~16:30,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7층 대강당

□ 참석 대상: 총 22명

○ (부산지방고용노동청) 청장,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, 선임 및 담당감독관

○ (안전보건공단) 부산광역시본부장

○ (안전관리전문기관) 17개사\*

\*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총 37개사 중 17개사로 간담회 참석대상 기관 수 조정

<제외대상 20개사(지정한계 150개 이상인 기관 중에서 ①'19 평가 결과 A등급, ②'20.6.23. 간담회 참석 기관, ③'20,'21 신규 지정 기관, ④관할 외 지역(대구) 제외)>

□ 주요 내용

-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배경
- ② '21년 부울경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 설명
- ③ 협업방안 토의 및 질의 응답, 애로사항 청취 등

□ 진행 순서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5:00 ~ 15:10 (10')	참석자 소개 및 간담회 개최 배경설명	사회자
15:10 ~ 15:15 (5')	인사 말씀	청 장
15:15 ~ 15:25 (10')	안전관리전문기관 관련 당부사항 등	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장
15:25 ~ 15:40 (15')	'21년 부울경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	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
15:40 ~ 16:00 (20')	우수사례 발표 (2개사)	기관 대표 2명
16:00 ~ 16:25 (25')	사망사고 감축 활동 협업방안 토의 및 질의응답 등	청장 주재 (참석자 전원)
16:25 ~ 16:30 (5')	마무리 말씀	청 장



## 목 차



- I. '20년 부·울·경 산업재해 현황 ..... 1p
  
- II. (부울경) '21년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 ..... 7p
  
- III. 협조 및 안내사항 ..... 13p
  
- IV. 우수사례 발표 자료 ..... 17p
  
- ※ 참고 1) 기술지도 시 추락·끼임 위험작업 주요 확인사항 .....31p
  
- ※ 참고 2)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 
두기 지침(사업장용) .....34p

## I. '20년 부·울·경 산업재해 현황



# '20년 부·울·경 산업재해 현황

## (부·울·경)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현황

□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총 147명 발생, 전년 대비 9명 증가

(단위: 명)

구 분	'20년				'19년				'18년				증감('19년 대비)			
	계	제조	건설	기타	계	제조	건설	기타	계	제조	건설	기타	계	제조	건설	기타
부산청체	147	55	64	28	138	43	69	26	142	42	73	27	9	12	△5	2
부산청	22	7	10	5	18	5	11	2	18	6	5	7	4	2	△1	3
부산동부	11	3	7	1	14	1	11	2	19	3	11	5	△3	2	△4	△1
부산북부	14	5	5	4	15	4	9	2	22	4	14	4	△1	1	△4	2
창원	26	12	8	6	21	10	7	4	24	8	14	2	5	2	1	2
울산	25	12	12	1	27	5	16	6	23	9	11	3	△2	7	△4	△5
양산	22	7	11	4	23	10	8	5	18	7	8	3	△1	△3	3	△1
진주	14	4	6	4	11	3	4	4	13	2	8	3	3	1	2	0
통영	13	5	5	3	9	5	3	1	5	3	2	0	4	0	2	2

❖ (업종별) 건설업은 감소하였으나(△5), 기타업종은 증가(+2), 특히 제조업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(+12)

\* (지청별) 부산동부(△3), 울산(△2), 부산북부(△1), 양산(△1)은 감소하였으나, 창원(+5), 부산청(+4), 통영(+4명), 진주(+2명)는 증가

- 업종별로 울산은 제조업(+7명), 양산은 건설업(+3명), 부산청은 기타업종(+3명)에서 증가

- (월별 발생) '20.8월 이후 사고사망자 수 본격 증가, 8월 > 10월·11월 순으로 사고사망자 발생

(단위: 명)

구분	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계	147	7	11	14	7	13	14	8	21	7	16	16	13
제조	55	2	4	4	2	8	3	3	8	3	6	7	5
건설	64	2	6	6	5	5	6	3	11	3	6	7	4
기타	28	3	1	4	0	0	5	2	2	1	4	2	4

- (발생형태별) 사고 발생 형태별로는 떨어짐>끼임>갈림·뒤집힘>부딪힘 순으로 사망자 발생, 전년 대비 끼임으로 사망하는 경우 100% 증가(13→26)

(단위: 명)

구분	계	떨어짐	끼임	부딪힘	갈림 뒤집힘	물체에 맞음	무너짐	넘어짐	기타	
전체	'20년	147	60	26	10	13	9	2	1	26
	'19년	138	63	13	9	13	16	6	4	14
	'18년	142	56	19	9	18	7	6	1	26
부산청	'20년	22	6	4	1	1	1	2	0	7
	'19년	18	7	3	1	1	1	0	1	4
	'18년	18	6	3	1	3	0	0	0	5
부산 동부	'20년	11	5	3	1	1	0	0	1	0
	'19년	14	11	1	0	1	0	0	0	1
	'18년	19	11	1	0	1	2	0	0	4
부산 북부	'20년	14	5	2	1	2	1	0	0	3
	'19년	15	8	4	1	0	1	0	0	1
	'18년	22	7	3	0	7	0	1	0	4
창원	'20년	26	9	2	3	5	3	0	0	4
	'19년	21	7	1	1	3	5	2	0	2
	'18년	24	13	2	3	1	1	3	0	1
울산	'20년	25	13	6	0	1	0	0	0	5
	'19년	27	16	0	1	5	0	3	2	0
	'18년	23	6	2	3	2	3	1	0	6
양산	'20년	22	10	3	2	1	3	0	0	3
	'19년	23	8	2	3	2	3	1	0	4
	'18년	18	4	5	1	3	0	1	1	3
진주	'20년	14	8	2	2	1	0	0	0	1
	'19년	11	4	2	1	0	3	0	0	1
	'18년	13	5	3	1	1	1	0	0	2
통영	'20년	13	4	4	0	1	1	0	0	3
	'19년	9	2	0	1	1	3	0	1	1
	'18년	5	4	0	0	0	0	0	0	1

\* 기타는 감전, 교통사고, 폭발·파열, 빠짐·익사, 산소결핍, 화재 등 포함

○ (건설업종-규모별) 건설업의 경우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금액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비율('19년 62.3%, '20년 54.7%)이 가장 높으나 규모별로 고르게 발생

(단위: 명)

구분	계	1억 미만	1~3억	3~20억	20~120억	120억 이상	분류불능	
전체	'20년	64	18	8	9	13	14	2
	'19년	69	22	9	12	9	16	1
	'18년	73	19	13	11	13	17	0
부산청	'20년	10	2	1	1	2	4	0
	'19년	11	4	2	0	1	4	0
	'18년	5	3	0	0	1	1	0
부산 동부	'20년	7	1	0	1	3	2	0
	'19년	11	4	1	2	0	4	0
	'18년	11	3	0	2	1	5	0
부산 북부	'20년	5	0	0	1	2	2	0
	'19년	9	5	0	3	1	0	0
	'18년	14	2	2	3	4	3	0
창원	'20년	8	6	1	0	0	1	0
	'19년	7	4	1	0	0	2	0
	'18년	14	3	7	2	0	2	0
울산	'20년	12	3	1	2	2	3	1
	'19년	16	3	1	2	6	3	1
	'18년	11	3	1	0	4	3	0
양산	'20년	11	6	2	1	2	0	0
	'19년	8	2	2	3	1	0	0
	'18년	8	1	1	3	1	2	0
진주	'20년	6	0	1	2	2	0	1
	'19년	4	0	2	1	0	1	0
	'18년	8	2	2	1	2	1	0
통영	'20년	5	0	2	1	0	2	0
	'19년	3	0	0	1	0	2	0
	'18년	2	2	0	0	0	0	0

○ (제조업종-규모별)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중·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('19년 67.4%, '20년 69.1%)

(단위: 명)

구분		계	5인 미만	5~49인	50~99인	100~299인	300인 이상
전체	'20년	55	6	32	4	4	9
	'19년	43	3	26	5	3	6
	'18년	42	5	17	2	6	12
부산청	'20년	7	2	4	0	0	1
	'19년	5	1	3	0	0	1
	'18년	6	0	3	0	2	1
부산 동부	'20년	3	0	3	0	0	0
	'19년	1	0	1	0	0	0
	'18년	3	2	1	0	0	0
부산 북부	'20년	5	2	2	1	0	0
	'19년	4	1	2	1	0	0
	'18년	4	1	2	0	1	0
창원	'20년	12	0	8	2	2	0
	'19년	10	1	7	1	1	0
	'18년	8	1	2	1	2	2
울산	'20년	12	1	4	0	1	6
	'19년	5	0	1	0	1	3
	'18년	9	0	2	0	0	7
양산	'20년	7	0	7	0	0	0
	'19년	10	0	9	0	1	0
	'18년	7	0	5	1	1	0
진주	'20년	4	1	2	0	1	0
	'19년	3	0	1	2	0	0
	'18년	2	0	1	0	0	1
통영	'20년	5	0	2	1	0	2
	'19년	5	0	2	1	0	2
	'18년	3	1	1	0	0	1



## Ⅱ. (부울경) '21년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

II

[부울경] '21년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

가. [부·울·경] 사망사고 감축 목표

목표	사고 사망자수 <b>147명</b> (‘20년)→ <b>103명</b> (‘21년) 이하 <b>44명 감축</b> (전년 대비 30%↓) * 조사대상 통계 기준
----	--

**「'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내용」**

- ① [추락·끼임] 건설·제조현장 ‘3대 핵심 안전조치’ 확행  
· 추락위험 방지 조치, 끼임위험 방지 조치, 보호구 지급·착용
- ② [위험의 외주화]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
- ③ [화재·폭발] 적시·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

나. 건설현장 점검·감독 강화

❖ 건설업은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4명 감소하였지만, 여전히 전 업종 중 사고사망자 수 비중이 43.8%로 가장 많이 발생  
- 특히 120억 미만 소규모 현장(73.0% 차지)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

□ 공사금액 규모별 차등관리 및 위험현장 집중관리

- (3억 미만 소규모현장)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자\*를 상대로 “추락” 재해방지 교육 등 실시 ▷ 지자체를 통해 업체 명단 확보
  - 안전공단지킴이 활용하여 상시패트를 점검하고 고위험사업장 감독 실시
- \* 추락 등 사고다발하는 지붕보수, 인테리어 시공 등 전문건설업 공사는 기간이 짧고 정확한 착공시기나 현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감독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에 집중하여 관리
- (3~120억 미만 중소규모) 전산시스템(K2B) 등을 활용해 건설업 추락 등 위험작업을 적시 파악하고 점검·감독 실시 ▷ 패트를카를 활용하여 3대 기초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점검·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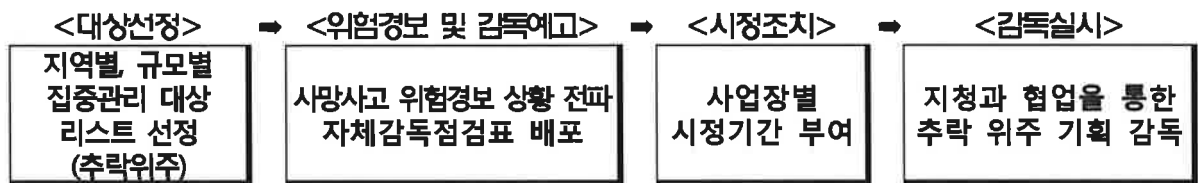
- (120억 이상 대형현장) ① 자율안전건설팀\* 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·지원, ②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\*\*, ③ 건설공사 관계자(발주,설계·감리,시공 등)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여부 점검 등 산재예방 조치의무 이행상태 집중관리

\*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사고사망만인율 우수업체

\*\* 터널,교량공사 등 대형사고 고위험 현장

## □ 사망사고 다발지역 위험정보 및 감독예고제 실시

- (위험정보 및 감독예고제) ① 부산권역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증가 지역 선정하고(매분기 타깃지칭 선정), ② 해당지역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위험정보 상황 전파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, ③ 자체 자율점검실시토록 요청 및 시정기간 부여, ④ 추락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기획감독 실시



## 다.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제조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·감독 강화

❖ '20년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4.9%(7명) 증가 - 50인 미만 사업장(사망재해 70.9% 차지) 대상 재해예방 관리 필요

## □ 소규모 제조업 끼임 재해예방 밀착책임관리제 추진

- (추진방향)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5~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책임관리 실시
- (추진계획) 대상선정 → 점검 → 모니터링 → 감독실시
  - (대상선정) 최근 2년간 중상해재해(2인이상)가 발생 하였으나, 노동(지)청 지도·감독 이력이 없는 사업장(약 240여개소\*) 대상

\* 대상 물량 반기별 분할, 재해 다수발생 사업장 우선 실시(상반기 내 절반)

- (점검) 현장 방문 후 **맞춤형 지도 실시**, 특히 추락·끼임 위주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 부여
- (모니터링) 담당자별 사업장 지정, **매월 자율점검상황 모니터링**
- (감독) 지도사항 미개선 및 재해추가 발생 사업장에 대해 **감독 실시**

## □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 릴레이 기획감독 실시

- (추진방향) 부·울·경 내 산재취약\* 구역 선정 후, 강력한 감독 실시하여 안전·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변지역으로의 경각심 확대
- '20년 김해지역 릴레이 기획감독 추진 등을 통해 사고사망자 6명 감소('19년 7명 → '20년 1명) 효과로 인해 '21년 타 지역 확대추진

\* '20년도 부·울·경 제조업 사망자 58명 중 창원지역이 15명 차지(25.9%)하고 있으며, 그 중 함안군 5명(33%)으로 높은 비중 차지

- (추진계획) 사전조사→대상선정→사전안내→자율개선→감독실시

사건 조사	>	대상 선정	>	사전 안내	>	자율개선	>	감독 실시
사망사고 다발구역 내 사고 유형 및 세부 업종 분석		5~49인 소규모 제조업체 중 최근 3년간 사고성 재해 다수(2건이상) 발생 사업장		대상 사업장에 감독착안사항 및 자율점검표 배포		자율개선 기회 제공 및 개선 결과 회신		자율개선 미흡 사업장에 대해 감독 실시

- (릴레이실시) 상반기 창원(함안)지역 집중관리, 상반기 사망사고 현황 분석하여 하반기 취약지역 선정 후 릴레이 기획 감독 추가 실시

## 라. 부산권역 사고다발 업종인 조선업에 대한 지역특화 산재 예방활동

- ❖ 조선업은 전국 사업장의 76.6%가 부산권역 밀집, 최근 2년간 사고사망자 20명 중 300인 미만 업체 17명(85%), 그중 협력업체가 13명(76.5%) 차지
- 대형조선소의 중소규모 협력업체 위주의 재해 예방활동 필요
- 특히 생산업무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핵심 타겟으로 선정

## □ 조선업 협력업체 맞춤형 안전·보건 컨설팅

- (추진방향) ① 부·울·경 관내 대형조선소\* 협력업체 현황조사 실시, 컨설팅 희망업체 및 사고성재해 이력 있는 사업장\*\* 선정, ② 사업안내, ③ 희망업체 컨설팅 신청, ④ 노동(지청)·공단 합동컨설팅 실시(50개소)
  - \* 현대중공업(울산), 대우조선해양(통영), 삼성중공업(통영), 현대미포조선(울산), STX조선해양(창원), 한진중공업(부산), 대선조선(부산), 성동조선해양(통영), 세진중공업(울산)
  - \*\* 신청 사업장 우선실시, 차순위 재해 이력 있는 사업장(신청 없는 경우) 대상 실시
- (컨설팅실시)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·보건 역량강화 및 직무수행(유해위험방지,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)\* 여부 중점 확인
  - \* 보호구착용관리,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, 위험성평가 미실시, 기계기구점검 등
- (지속관리) 컨설팅 실시내용은 협력업체 현황 자료에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실시

## 마.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추진

### □ 지역 안전보건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

- 부산청 사망사고 절반감축 추진협의회\*(본협의회, 건설·제조·안전문화분과로 구성)를 개최하고 사망사고 감축방안 모색, 실천과제 발굴·시행\*\*
  - \* 본협의회(서면)개최('21.2월), 분과회의('21.5월중) 및 본협의회('21.6월중) 개최예정
  - \*\* 청-부산시-공단 합동점검 실시예정: 120억 미만 부산시 발주 공사현장(100여개소)

### □ 패트롤카를 활용한 3대 핵심 안전 수칙 정착 및 산재 예방 분위기 확산

- 지역 내 패트롤카 총 동원하여 소규모 공사현장, 산업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순회, 홍보, 점검 등 실시(매월 말일)

### □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 강화

- ① 민간재해예방기관 간담회 통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중점 점검토록 지도 및 ② 부실 기술지도로 사망사고 발생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예정

### Ⅲ. 협조 및 안내사항

□ **사망사고 감축활동 적극 협조**

-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느슨해진 안전의식 분위기 속에 중대재해 발생으로 **부울경 관내에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안전의식 제고가 각별히 필요한 시기임**
- **우리청에서는 (부울경) 건설·제조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·수시 기획감독 등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**
- **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기술지도\* 시 3대 안전조치(주요 확인사항 : 붙임 참고 1)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장에서 상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불량현장은 패트를 점검·감독으로 적극 연계하도록 협조 당부**
- \* (주요내용)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끼임·추락사고 예방중심의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 결과 K2B 입력 철저, 기술지도 내실화 등

□ **민간재해예방기관 점검계획 및 관리 강화**

- 재해예방기관 정기점검 시 기술지도 결과 미입력\*, 불량통보 미흡 등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**내실있는 현장 기술지도 철저**
- \* 기술지도 결과 미입력 등 범위반시 행정처분 기준(시행규칙 별표26) 등에 따라 엄정 조치
- 재해예방기관이 **위탁받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, 재해예방기관이 전체 위탁사업장에 대하여 사고발생 사실 및 유사사례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, 자체적으로 전체 위탁사업장에 전수 기술지도를 실시\***
- \* 정기 기술지도 시, 유사 공정에 대하여 정밀 기술지도 실시
- ※ 재해예방기관 정기 점검 시, 정밀 기술지도 실시 여부 확인

□ **기술지도 및 사업장 방문 시, 코로나19 예방 수칙[붙임 참고 2] 적극 홍보 협조**

- \* 외국인 고용사업장 기술지도 시, 방역 및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병행 지도

## **IV. 우수사례 발표 자료**



##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

### 1

#### 일반현황(회사소개)

1. 회사명 : (주)한국산업안전검사
2. 대표자 : 기 영 식
3. 소재지 :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72번길 2(팔용동 6-9번지)
4. 위탁한계 : 사업장 수 210개소 14,000명 지정
5. 사업의 종류 : 안전관리전문 위탁 사업  
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사업
6. 안전관리지도요원 : 9명

### 2

#### 도입배경

##### 배경

□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제조업 끼임·떨어짐 재해발생 증가.

- 고위험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필요성.
-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 유형[끼임, 떨어짐]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성.
- 기업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개선에 따른 재해감소 필요성.
- 고위험 재해다발 기계설비에 대한 중점기술지도로 재해감소 필요성.
- 비 정상작업시 재해발생 증가에 따른 재해감소 필요성.

: 상기의 필요성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도입 추진.

### 3

### 추진목표설정 및 과정

**“ 2021 zero 365 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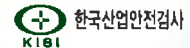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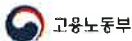
**3zer0**  
중대재해  
아차사고  
산업재해를

**3** 반드시 지켜야할  
**6**가지

- 안전보안구 착용
-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
- 위험해지물론 시정
- 작업 전 안전 점검
- 작업장 정리정돈
-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

**3** 반드시 지켜야  
**5**가지

- 안전시설물 점검 확대
- 방호장치 교체
- 작업 및 보행용 스텝용론 사용
- 단색 작업
- 위험 구역 무단출입



### 4

### 추진 성과

#### □ 추락·끼임사고 재해감소 위한 사업장 안전의식 고취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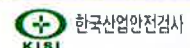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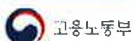
- 비정형작업 간 산업재해 감소 위한 Lock-out-tag-out 점검 표지판 사업장 무료 제공
- 끼임사고 안전의식 고취 위한 끼임주의, 밀림주의 등 안전보건 스티커 재해예방 무료 제공



- 끼임사고 위험기계 보유 100인 미만 사업장 자율점검표 제출관련 작성예시 안내 지도
- 추락방지조치(안전난간, 2m이상 고소작업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상시점검) 점검 지도
- 끼임 방지조치(끼임 대상 산업기계 안전장치 설치여부) 및 수리·점검시 LOTO 작업절차 안내

#### 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지원(사업주에 적극홍보)

-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]의 이위범령 위임된 사항 제정 독려지원 (50인 22.01.27., 5~49인 24.01.27.)
- 규모·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·배포 및 사업장 방문시 체계 구축 및 작동 적용여부 추적 관리 지원



# 4

## 추진 성과

### □ 재해감소 위한 현수막 부착 및 안전 캠페인 실시 안전의식 고취 지원

- 기업사고 등(비정영작업) 산업계에 예방 홍보안내 차 장원 산업단지 내 현수막 부착 및 안전캠페인 진행



- 관리아는 제조업 사업장 및 캠페인 시 마스크(kf94) 무료 나눔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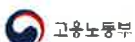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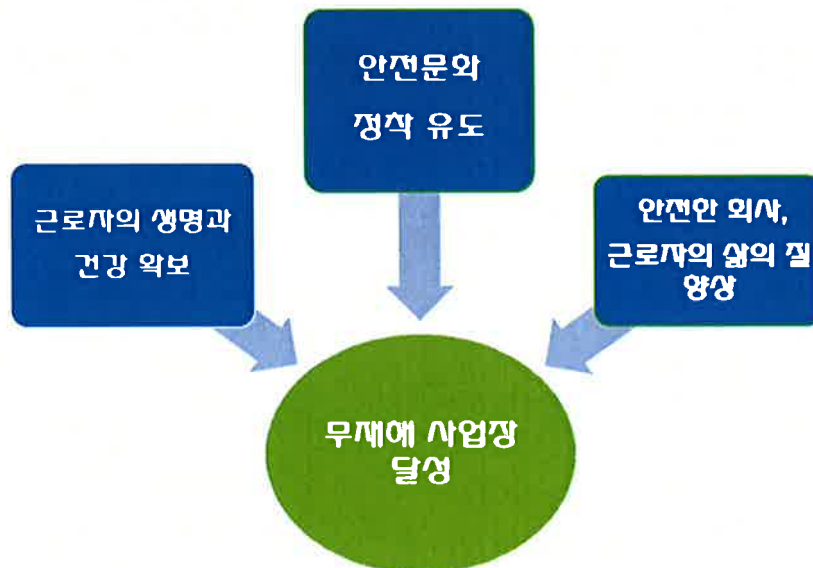
### □ 소규모 사업장(컨설팅) 정부지원사업 홍보 지원

- 안전투자역신사업 및 스마트공장·소공인 들린 제조원경 조성사업 사업장 적극 홍보



# 5

## 기대효과 및 제언



## 산재예방노력 우수사례

### 한국산업안전본부(주)



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기관, 고객에게 사랑받고 믿음으로 주는 기관, 한국산업안전본부(주)가 언제나 함께 합니다.

### 1. 일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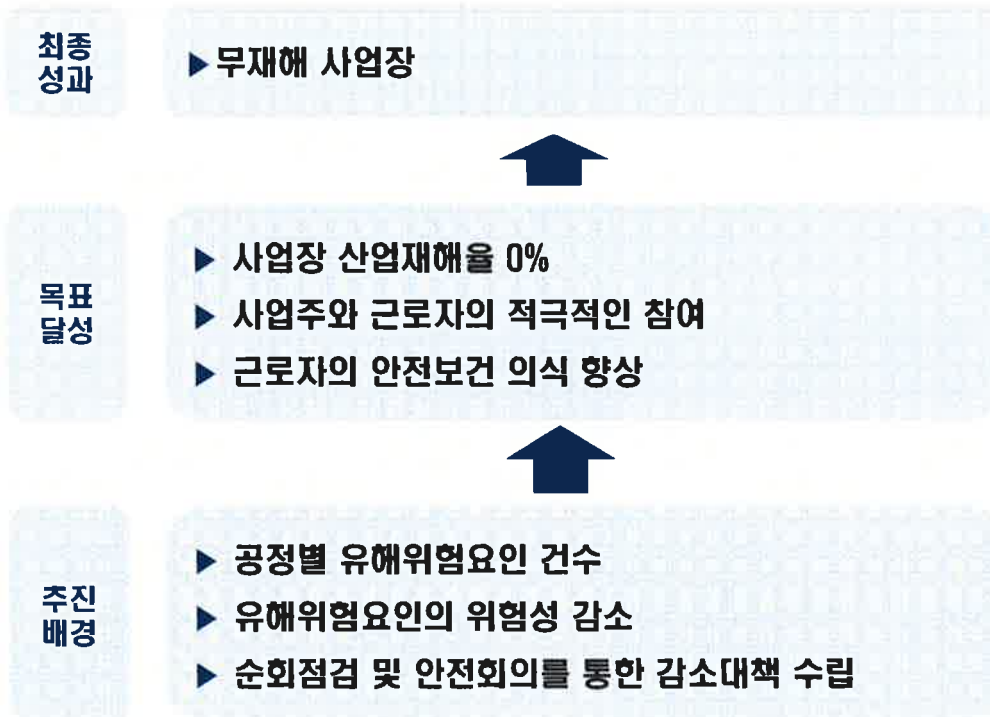
기관 개요

- 1) 기관명 : 한국산업안전본부(주)
- 2) 대표자 : 이진호
- 3) 소재지 : 부산 북구 백양대로1025 협진태양쇼핑프라자 223~4호
- 4) 근로자수 : 10명
- 5) 지정한계, 지정근로자수 : 240개소, 16,000명

사업장 개요

- 1) 사업장명 : (주)태영열처리
- 2) 대표자 : 정영무
- 3) 소재지 : 부산 사하구 다산로176번길 17(다대동)
- 4) 설립일 : 1999년 07월 01일 설립
- 5) 근로자수 : 55명
- 6) 주요생산품 : 자동차엔진부품 열처리

## 2. 추진 절차



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①

▣ 열처리 장입 시 사용하는 크레인 훅해지장치 설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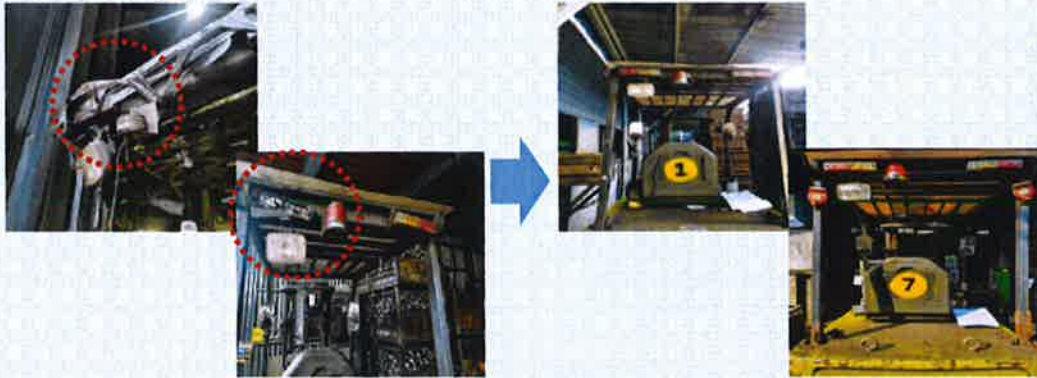


크레인으로 제품적재함 장입 시 훅해지장치 탈락 사용으로 흔들림에 의한 제품적재함 맞음, 부딪힘 재해 위험

- > 탈락 된 크레인 훅해지장치 설치한 후 작업 실시
- > 크레인 작업 전 훅해지장치 정상작동 상태 확인 및 작업자가 훅해지장치 임의고정, 변경, 탈락 사용 절대 금지토록 안전교육 실시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②

▣ 지게차 후미등, 경보음, 경광등 수리 및 교체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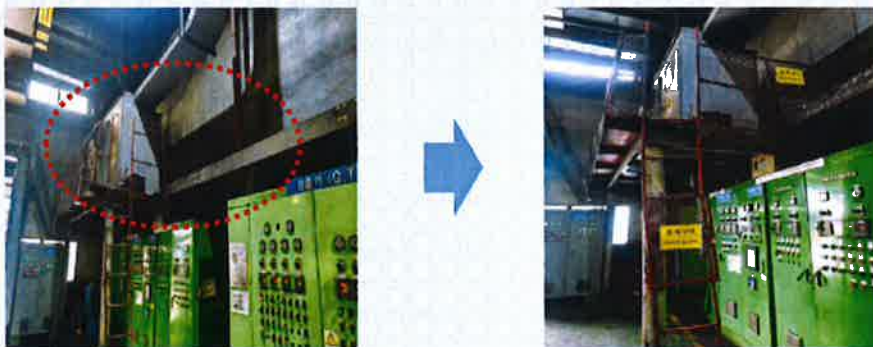


야적장 협소 공간에서의 다수의 지게차를 운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지게차 후미등, 경보음, 경광등 일부 파손 및 미작동으로 지게차 운행 작업 시 부딪힘 등 재해 위험

> 사업장에 보유중인 지게차 총 8대 전수 점검 후 후미등, 경보음, 경광등 수리 및 교체 완료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③

▣ ACV 점검용 사다리 상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건



ACV 점검용 사다리 상부에 난간대 일부 미흡으로 작업근로자 상부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재해 위험

> ACV 점검용 사다리 상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 
> ACV 점검용 사다리 진출입로에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④

▣ 전동지게차 충전박스 전선케이블 절연 조치 건



전동지게차 충전박스의 전선케이블 일부 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위험

> 피복 손상 된 전선케이블 절연테이프로 절연 조치 후 사용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⑤

▣ 지게차 작업 종료 후 시동키 분리 및 별도 보관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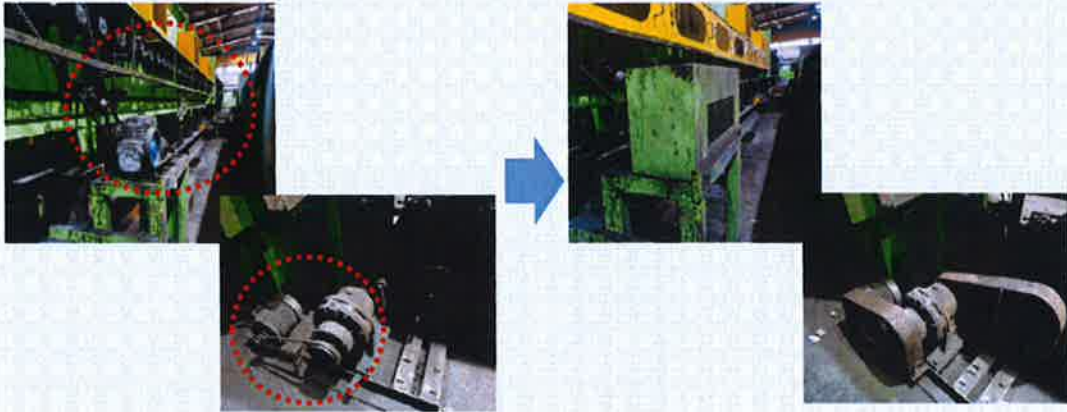


지게차 작업 종료 후 시동키 관리 미조치로 무자격자 운전 등 안전사고 위험

> 지게차 시동키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분리하며, 지게차 시동키 보관함에 별도 보관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⑥

▣ 열처리 연속로 측면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건



열처리 연속로 측면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 미 방호조치로 작업근로자 접근 작업 시 신체 일부 및 옷자락 등 말림, 끼임 등 재해 위험

> 노출 된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후 작업 실시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⑦

▣ 샌드페이퍼 측면 동력전달부(V-Belt) 방호덮개 설치 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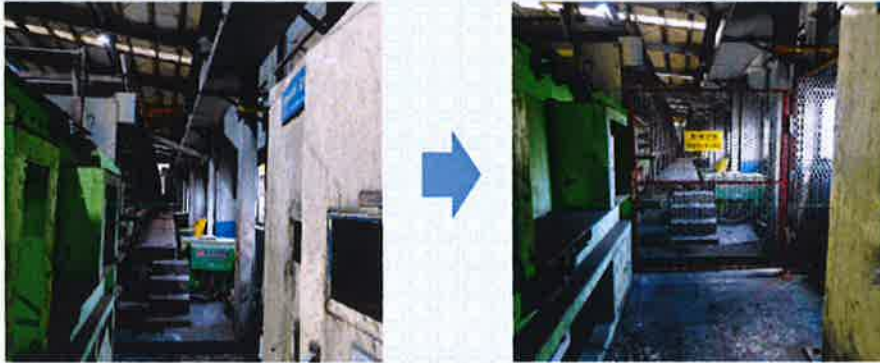
샌드페이퍼 측면 동력전달부(V-Belt) 방호덮개 탈락 사용으로 작업근로자 접근 작업 시 신체 일부 및 옷자락 등 말림, 끼임 등 재해 위험

> 노출 된 동력전달부 (V-Belt) 방호덮개 설치 후 작업 실시

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⑧

▣ 열처리 연속로 측부 통로 출입통제 조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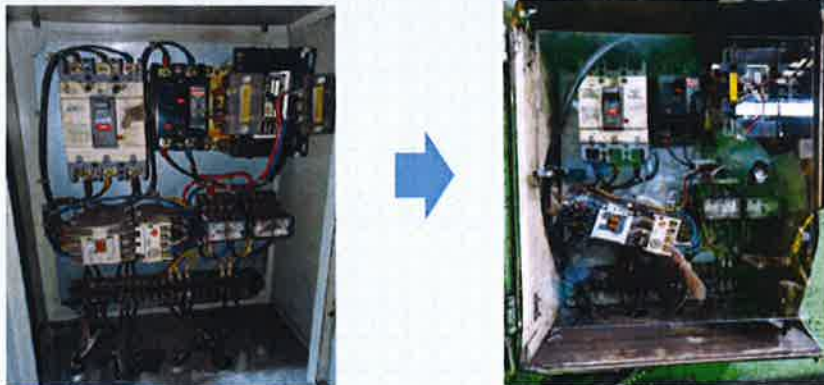


열처리 연속로 측부 통로 개방으로 주변 근로자 진입 시 안전사고 위험

> 열처리 연속로 측부 통로 입구 차폐문 설치 및 통제구역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⑨

▣ 분전함 내 노출 된 충전부 절연 조치 건



분전함 내 충전부 노출로 인하여 접촉 시 감전 재해 위험

> 분전함 내 노출 된 충전부에 증판을 설치하여 감전재해 예방 조치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⑩

▣ 연속로 소입냉간부 안전난간대 설치 건



연속로 소입냉간부 일부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난간대 기준미달 및 추락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떨어짐 재해 위험

> 연속로 소입냉간부 안전난간대 및 안전펜스 설치

### 3. 추진 과정 및 성과 - ⑪

▣ 10호기 연속로 계단부 난간대 설치 건



10호기 연속로 계단의 일부 난간대가 미 설치되어 추락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떨어짐 재해 위험

> 10호기 연속로 계단 난간대 보완 설치

#### 4. 향후 발전 계획

- ▶ 사업장 내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동 전개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노·사 및 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
- 전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를 위한 위험성평가 설문지 활용, 분석을 통하여 현장의견 반영
- ▶ 매월 순회점검 결과를 분기별 회의를 통한 피드백 및 현장 개선 안내 독려
- ▶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안심일터 확보

- 감사합니다. -

## 참고 1

## 기술지도 시 추락·끼임 위험작업 주요 확인사항

### □ 추락 위험작업 시 중점 확인 사항(건설·제조)

점검 항목	착안 사항
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(안전보건규칙 제13조) <건설, 제조>	- 상부 난간대는 바닥 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-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 - 난간대 간의 간격은 60cm 이내 - 취약한 방향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
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(안전보건규칙 제24조) <건설, 제조>	- 견고한 구조, 심한 손상이 없는 재료 사용 - 발판의 간격은 일정, 폭은 30cm 이상 -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 방지
계단의 난간 (안전보건규칙 제30조) <건설, 제조>	-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측면에 안전난간 설치
작업발판(비계)의 구조 (안전보건규칙 제56조) <건설>	- 작업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- 작업발판 간 틈은 3센티미터 이상 -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 - 견고한 구조
달비계의 구조 (안전보건규칙 제63조) <건설>	- 와이어·섬유로프, 체인 등의 재료 적정성 -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-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, 고정 -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대, 구명줄 설치 -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
작업자 서 있는 장소의 추락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42조) <건설, 제조>	-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-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까운 지점에 안전방망을 설치 -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
작업자가 작업이나 이동 중 추락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43조) <건설, 제조>	- 작업발판 이나 통로의 끝 안전난간 설치 - 개구부 덮개 설치 -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 시 안전방망, 안전대 착용 등
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(안전보건규칙 제44조) <건설, 제조>	-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 - 지지로프 등은 처짐 또는 풀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-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
지붕 위 작업의 추락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45조) <건설, 제조>	- 슬레이트,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폭 30cm 이상 발판을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
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(안전보건규칙 제64조) <건설>	-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 또는 재료의 손상여부,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, 로프의 부착상태 등
이동식비계 (안전보건규칙 제68조) <건설, 제조>	- 갑작스런 이동 방지 조치 -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- 갑작스런 전도 방지 조치

□ 끼임 위험작업 시 중점 확인 사항(제조)

점검 항목		착안 사항
<b>① 끼임 예방조치 공통 적용사항</b>		
사용의 제한 (안전보건규칙 제36조)		- 방호조치 미실시, 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 사용금지
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87조)		-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폴리 등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설치 - 회전축·기어·폴리 등의 부속 키·핀 등은 문힘형 또는 덮개를 설치 - 벨트 이음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-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 구조의 발판을 설치 - 선반 등의 돌출한 회전 가공물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- 원심기, 분쇄기 등의 개구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- 종이·천·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- 압력용기 등의 부속 원동기·축이음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
기계의 동력차단장치 (안전보건규칙 제88조)		- 동력 기계에 스위치·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 - 절단·인발·압축·꼬임·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기계에 설치(작업 위치에서 조작가능한 위치)
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(안전보건규칙 제92조)		-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 -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 - 작업지휘자 배치 -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있는 경우 미리 방출
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(안전보건규칙 제93조)		-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해체 또는 사용정지 금지 (방호장치의 수리·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) - 방호장치의 수리·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 완료 즉시 방호장치의 기능 복구
<b>② 위험기계·기구별 추가 확인사항</b>		
컨베이어	비상정지장치 (안전보건규칙 제192조)	- 컨베이어 등에 말림 위험 및 비상시 운전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 설치(무동력 사용시 제외)
	통행의 제한 등 (안전보건규칙 제195조)	-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 설치 -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 시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톱퍼 설치 또는 출입 금지
크레인	방호장치의 조정 (안전보건규칙 제134조)	- 크레인, 이동식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정상작동토록 조정 - 권과방지장치는 훅·버킷 등 달기구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간격이 0.25m(직동식 : 0.05m) 이상으로 조정 -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시 권상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, 경보장치 설치
	해지장치의 사용 (안전보건규칙 제137조)	-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, 작업중 훅해지장치를 사용

	<b>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4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크레인을 사용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조치 준수</li> <li>1. 인양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</li> <li>2. 폭발·누출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</li> <li>3.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작업 금지</li> <li>4. 미리 근로자 출입 통제, 인양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 금지</li> <li>5. 인양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동작 금지(신호자에 의하여 작업 시 제외)</li> <li>-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실시</li> <li>1. 크레인 제작기준,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, 사용</li> <li>2.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 취급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주지</li> </ul>
<b>지게차</b>	<b>전조등 등의 설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79조)	- 전조등, 후미등 미설치 지게차의 사용금지(필요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 시 제외)
<b>리프트·피트 승강기</b>	<b>권과 방지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151조)	- 리프트(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)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 방지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
	<b>피트 청소시의 조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5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리프트 피트 등의 바닥 청소 시 운반구 낙하로 인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실시</li> <li>1.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 설치</li> <li>2.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거치, 역회전방지기능의 브레이크로 구동모터 또는 원치 제동</li> </ul>
	<b>운반구의 정지 위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55조)	-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 금지
<b>산업용 로봇</b>	<b>교시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22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시작업 시 오동작 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</li> <li>1. 조작방법.순서, 매니플레이터 속도, 신호방법, 이상발견</li> <li>2. 근로자, 감시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운전 정지</li> <li>3. 작업 중 기동스위치 등에 "작업 중" 표시 조치</li> </ul>
	<b>운전 중 위험 방지</b> (안전보건규칙 제223조)	- 높이 1.8m 이상의 울타리(가동범위 등 고려해 높이 조절 가능) 설치, 설치 불가능한 일부 구간은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설치
<b>식품 제조용 설비</b>	<b>식품 분쇄기의 덮개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130조)	-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데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 설치,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 사용
<b>사출기</b>	<b>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21조)	- 사출성형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말림 위험 시 게이트가드(gate guard)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등 조치
<b>프레스</b>	<b>프레스 등의 위험방지</b> (안전보건규칙 제10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프레스 등 작업중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접근하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</li> <li>-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</li> </ul>
	<b>금형조장작업의 위험방지</b> (안전보건규칙 제104조)	-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·해체·조정작업 중 해당 체가 위험한계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블록을 사용

< 지침 시행 배경 >

□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

- (배경)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
  - (주요 개선사항)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,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.5단계, 2.5단계 등을 사용
    -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
- <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>

구분	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핵심 지표	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100명 미만  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·제주는 10명 미만)	(수도권) 100명 이상  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·제주는 10명 이상)	※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	전국 400명~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~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		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,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, ③ 역학조사 역량, ④ 감염재생산 지수,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,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,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				

\* 특히 2.5~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

□ 지침 활용

- 본 지침은 중대본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(20.11.1)」됨에 따라,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.
-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.
-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
#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

## <공통사항>

-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
-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, 전체 노동자\*에게 매뉴얼 안내·교육 등을 통해 전파
  - \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포함
-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, 보건소·의료기관(선별진료소, 이송병원 등)과 비상연락체계 구축

#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
## <공통사항>

-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
- 휴가제도(연차휴가, 병가, 가족돌봄휴가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
-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

## <단계별>

-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

\*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		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

※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※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

##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\*은 방역수칙\*\* 준수

\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     \*\*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

# 3 회의·교육 및 모임·회식, 출장 등

## <공통사항>

-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



〈단계별〉

-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\*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\*\*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

\*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

\*\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		대면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소규모(100인 미만)로 실시	대면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소규모(50인 미만)로 실시	대면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소규모(10인 미만)로 실시

- 소규모 모임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모임,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시,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- 비필수적인 회식은 1.5단계에서는 소규모(100인 미만)으로 실시		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	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	1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

\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,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
-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

\*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,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(휴가, 재택근무, 휴업 등 활용)

##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〈공통사항〉

-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
- 근무 중 증상,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

〈단계별〉

-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(37.5°C이상)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여부 확인

※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,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\*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

**<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>**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매일	1일 2회 이상		1일 2회 이상 *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	

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\*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
\* 회사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
##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

### 〈공통사항〉

-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유힬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
- 책상간 간격,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되,
  -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·컴퓨터·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힬공간을 활용
-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(콜센터 등)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

### 〈단계별〉

-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  - 1.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 - 2.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
- 실내 휴게실, 탈의실, 흡연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, 이용 시 마스크 착용
  - \*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,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
  - 2.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

## 6 소독 및 위생·청결 등

### 〈공통사항〉

- 사무실, 작업장,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, 매일 2회 이상 환기
-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,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
- 사무기기, 사무용품 소독·청결을 유지하고, 손씻기·손소독, 기침예절 준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

**<단계별>**

-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
  - 2.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
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자제
  - 2단계부터는 금지
-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, 방역수칙 준수
  -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, 음식물 섭취 금지,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

**<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>**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차량 소독(매일),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	<b>1단계 + 탑승자 기록</b>	1.5단계 + 음식물 섭취 금지		2.5단계 + 한자리 띄어 앉기

